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5.11.7.(금) 조간	배포	2025.11.6.(목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분쟁조정2국 제3보험2팀	책임자	팀 장	최영석	(02-3145-5741)
		담당자	수 석	김동식	(02-3145-5742)
			조사역	이광태	(02-3145-5746)

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

- 의료과실 사고 및 고지의무 관련 -

주요 내용

- ◆ 질병·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하여 ❶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, ❷고지의무*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분쟁이 지속 발생

* 보험가입시 「청약서」상 질문사항(질병력·직업 등)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

-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

주요 인용사례 시사점

- ❶-1. **의료과실*로 인한 사고(사망, 후유장애 등)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**

*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

- ❶-2. **의료진의 적극적 개입(수술 등)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용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**

- ❷-1. **설계사의 고지방해*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**

*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

- ❷-2. **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**

1-1

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[분쟁 사례]

- A씨는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의식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사망하였고, 1차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*하고 유족과 합의

* 일반적으로 함께 시행하지 않는 두 가지 종류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는 점과 수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

- 유족은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예상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상해사고 불인정

[처리 결과]

-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
- 의료과실은 내재한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

[참고] 표준약관(질병·상해보험) 및 관련 판례

표준약관 제2조(용어의 정의)

가. 상해 :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.

[대법원 2010.8.19. 선고 2008다78491 판결]

질병치료를 위한 수술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,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·예견했다고 볼 수 없으며,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'우연한 사고'에 해당한다.

[대법원 2001.8.21. 선고 2001다27579 판결]

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, 사고원인이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.

1-2

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[분쟁 사례]

- B씨는 허리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단순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거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장해가 됨
 - 병원은 오진*으로 인한 의료과실을 인정하였으나,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적시에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(부작위)일 뿐이므로 상해의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

* 최초에 적절한 검사가 시행되었다면 '가'질환으로 진단되었어야 하나, 해당 검사가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'나'질환으로 잘못 진단

[처리 결과]

- 상해의 요건인 외래성은 신체내부 질병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것을 의미하고,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했다면 작위에 의한 의료과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외래성 인정 및 보험금 지급

[참고] 관련 판례

[서울고등법원 2023.5.18. 선고 2022나2017285 판결]

의사가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생명·신체가 침해된 경우, 의사의 부작위는 생명·신체의 안전과 관련하여 신체를 침해하는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. 의사의 부작위 역시 신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

※ 대법원 2023.8.18. 선고 2023다241858 판결에 의해 확정(심리불속행 기각)

소비자 유의사항

- ☑ 의료기관의 **의료과실**로 인해 **사망, 장애**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**보험계약**에서 보장하는 **상해사고**에 **해당**될 수 있으므로 **상해담보 가입여부** 및 **약관** 등을 확인하고 **보험금**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☑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**의료진의 부작위**에 의해 **의료과실**이 발생한 경우도 보험약관상 **상해**에 **해당**할 수 있습니다.

2-1

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,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

[분쟁 사례]

- **(사례 ①)** C씨는 TM보험*에 가입하면서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일부 질문을 받지 않거나** 질문에 답변할 틈 없이 바로 다음질문을 받아 고지 기회 자체가 없었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

* 고지의무 등 청약절차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계약

** 설계사가 입원여부에 대해 질의하지 않았음에도 과거 입원력 미고지를 사유로 계약해지

- **(사례 ②)** D씨는 보험가입시 허리주사치료 이력, 심장질환 진단 사실 등에 대해 설계사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여 고지하지 못했음*에도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

* 청약서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상기 질병력이 기표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됨

[처리 결과]

- 녹취 또는 모집경위서 등을 통해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어,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지한 보험계약을 복원

[참고] 표준약관(질병·상해보험)

제16조(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)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1.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(계약 전 알릴 의무)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
5.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,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때

2-2

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

[분쟁 사례]

- **(사례 ①)** E씨는 어깨질환에 대해 수술필요소견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이후 상해사고로 어깨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
- **(사례 ②)** F씨는 알코올의존증 입원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이후 상해사고로 사망하였고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

[처리 결과]

-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타당하나, 고지의무 위반 사항인 과거 질병력과 상해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

[참고] 상법 및 표준약관(질병상해보험)

상법 제655조(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)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1조(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)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

표준약관 제16조(알릴의무 위반의 효과)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... (이하생략)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소비자 유의사항

- 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**청약서의 질문사항**^{*}(고지의무사항)에 대해 **사실대로 알려야 하며**, 이를 위반할 경우 **계약이 해지**되거나 **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** 수 있습니다.

* TM보험의 경우 전화를 통한 설계사의 음성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체

- ☑ **설계사의 고지방해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**,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**계약을 해지**하거나 **보험금 지급을 거절**할 수 없습니다.
- ☑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**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 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**, 해지 이전에 발생한 **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**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, 보험약관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